

소비자보호 · 분쟁

탈취된 카드정보 5,707건, 부정사용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스스로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는 않는다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카드정보 탈취 경보와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을 대조했습니다. 정보 입력 행위와 중대한 과실의 법적 판단, 이의제기 절차를 구분합니다.

발행	연번	읽는 시간	작성
2026.08.18	2026_35	6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원문 확인일		
2026.08.18	2026.08.30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사안의 쟁점을 정보 유출 자체보다 부정사용 손실의 배분으로 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해킹 등으로 얻은 카드정보가 사용된 손실을 카드업자 책임으로 정합니다. 회원에게 책임을 돌리려면 카드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과실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피싱 화면에 정보를 직접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2026년 7월 6일 온라인 쇼핑몰의 피싱·해킹에 따른 카드정보 탈취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카드정보 탈취	5,707건	2026년 6월 29일 기준
탈취 정보	카드번호·유효기간·CVC·비밀번호 전체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령	2026년 7월 6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원칙적 책임	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회원 책임 예외	고의·중대한 과실	카드업자가 증명
이의제기	서면·전화·전자문서	조사 완료 전 청구 보류

두 기관과 카드사는 탈취 정보 전파와 부정 결제 시도 차단, 고객 보상 안내에 착수했습니다. 공격자는 쇼핑몰 결제화면과 비슷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을 유도한 뒤 결제 오류 메시지를 띄워 정상 화면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요구하면 입력하지 말고 창을 닫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입력했다면 카드 정지·재발급·비밀번호 변경과 통합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접근매체가 부정하게 얻어진 전자금융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회사 책임으로 둡니다. 카드정보의 해킹·도난·분실과 명의도용 카드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이 카드업자 책임으로 정합니다. 회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예외는 좁습니다. 카드업자는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실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비밀번호 누설, 카드 양도·담보 제공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사고

등을 열거합니다. 피싱 화면에 직접 입력한 정보가 어느 열거항목에 들어가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입력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중대한 과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약관이 열거한 사례와 당시 화면·경고·인증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카드업자입니다. 다만 카드번호·유효기간·CVC는 카드 재발급 전까지 여러 번 쓰일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카드 밖의 명의도용 위험으로 남습니다. 부정결제 금액 자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결제 오류 뒤 정상 화면이 다시 뜨면 정보 탈취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고, 승인 문자나 청구서를 본 뒤 이의를 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피싱 입력의 법적 기준 비밀번호 입력이 시행령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공개된 세부 기준이 부족합니다.	02 계약서 열거 카드사 약관의 중대한 과실 목록이 법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회사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03 개별 통지 시점 카드업자가 탈취 사실을 확인한 뒤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구체적 시한이 같은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04 주민등록번호 피해 카드 재발급은 결제위험을 줄이지만 카드 밖 명의도용 위험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결제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요구하면 입력하지 않고 창을 닫습니다. — 이미 입력했다면 카드사에 정지·재발급·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고 통합신고센터 112에도 신고합니다. — 청구서에서 모르는 승인 건을 찾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접수 번호와 화면·문자·통화기록을 보관합니다.
대상 회사	— 카드사는 계약서의 중대한 과실 항목을 가입 단계에서 읽을 수 있게 제시합니다. — 부정사용 조사 결과와 적용 조문·증거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국	— 피싱 화면 입력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기준과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열거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갈릴길 · 이번 탈취사건의 부정결제 손실을 카드업자와 회원 중 누가 부담할지는 개별 거래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중대한 과실이 아님

B

중대한 과실 인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와 카드사 약관에 피싱 입력 사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제도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금융제도 약관과 약관규제법 금융상품 신용카드 피해구제 카드 부정사용 보상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7건

7 확인 항목	5 1차 자료	0 파생 계산	6개월 뒤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01	2 차	2026년 6월 29일 기준 카드정보 탈취 5,707건 확인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소비자경보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	-----	--	---------

02	2차	카드번호·유효기간·CVC·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탈취 소비자경보 원문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3	1차	해킹 등으로 얻은 카드정보 사용의 손실은 카드업자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4	1차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은 카드업자가 증명하고 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제7항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5	1차	비밀번호 누설·카드 양도·담보 제공 등 중대한 과실 열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6	1차	전자적 침입으로 접근매체가 부정하게 얻어진 사고의 금융회사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7 1차 서면·전화·전자문서 이의제기와 조사 완료 전 청구 보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이번 피싱 입력사례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와 카드사 약관의 중대한 과실 항목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원호수 050과 관계없이 사이트 게시 순서에 따라 제35호를 부여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 구조를 분리해 표시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카드사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은 거래 경위, 약관과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